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87
----------	-------

발의연월일 : 2025. 6. 17.

발 의 자 : 박정하 · 박덕흠 · 주호영
엄태영 · 서일준 · 박정훈
김상훈 · 조은희 · 박상웅
윤한홍 · 김위상 · 김용태
김태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한 자 등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비교적 경미한 동물학대 행위에 적용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때 그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미한 학대 행위라도 이를 방치할 경우 더욱 심각한 동물학대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벌금 상향과 징역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

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7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7호의2를 각각 제8호 및 제8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1의3. 제10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한 자

1의4. 제10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1의5. 제10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7조(벌칙) ①·② (생 략)	제9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 ----- ----- -----.
<u><신 설></u>	<u>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 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 한다)</u>
<u><신 설></u>	<u>1의2. 제10조제5항제1호를 위반 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 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u>
<u><신 설></u>	<u>1의3. 제10조제5항제2호를 위반 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 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한 자</u>
<u><신 설></u>	<u>1의4. 제10조제5항제3호를 위반 하여 도박·시합·복권·오락 ·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 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u>

<신 설>

1. ~ 6. (생 략)

7. · 7의2. (생 략)

8. ~ 10. (생 략)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 전시 · 전달 ·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3. 제10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 · 선전한 자

1의5. 제10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8. · 8의2. (현행 제7호 및 제7호의2와 같음)

9. ~ 11.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삭 제>

<삭 제>

<삭 제>

<u>4. 제10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u> <u>여 도박 · 시합 · 복권 · 오락 ·</u> <u>유흥 ·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u> <u>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u>	<u><삭 제></u>
<u>5. 제10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u> <u>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u> <u>대여한 자</u>	<u><삭 제></u>
6. ~ 12. (생 략) ⑥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